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조형물의 정의 및 공공조형물의 보호 규정 신설 등〉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22호)

2026.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공공조형물의 정의 및 공공조형물의 보호규정 신설 등(안 제2조제1항 제3호의2, 제9조의6, 제9조의7 및 제42조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한규의원 등 17인
2. 발 의 일 : 2026. 2. 3.
3. 회 부 일 : 2026. 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곳곳에는 조각, 벽화, 설치미술, 기념비 등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 정체성 형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훼손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문화예술적·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공공조형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공조형물의 법적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공공조형물의 정의 및 공공조형물의 보호규정 신설 등

(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제9조의6, 제9조의7 및 제42조 신설)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 및 공공의 미관, 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공공 시설에 설치한 조각, 동상, 구조물, 설치미술, 기념비 등을 공공조형물로 정의하고(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과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철거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9조의6).

아울러, 공공조형물을 파손하여 외관을 해치는 등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훼손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하며, 훼손행위 방지 및 적발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안 제9조의7), 훼손행위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u>유사한 방법으로 오염시키거나 외관을 손상시키는 행위</u> 3. <u>광고물, 전단 등을 부착하는 행위</u> 4. <u>인화물질, 유해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방치하여 공공조형물을 손상시키는 행위</u> 5.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u> 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조형물의 훼손행위에 대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공공조형물 훼손행위의 방지 및 적발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u>제7장 벌칙</u> 제42조(과태료) ① <u>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조형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u>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9조제1항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 제12조제1항²⁾은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의 한 종류로 “공공조형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외에는 공공조형물이라는 용어와 이를 규율하는 국가법령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조형물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시설물등”³⁾을, 「미술진흥법」에서는 “공공미술품”⁴⁾에 대한 용어를 정의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공공조형물과 유사개념 비교 >

구분	공공조형물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시설물등	공공미술품
근거 법률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미술진흥법」 제2조제13호
대상	공공시설에 설치한 조각, 동상, 구조물, 설치미술, 기념비 등 조형물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및 분수대 등 공공조형물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벤치 등 편의시설물, 맨홀 등 공급시설물,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등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등을 통해 산출한 창작물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
-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퍼골러(pergola: 서양식 정자) 등 편의시설물
-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4) 「미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이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 “미술품”이란 작가가 미술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무형의 창작물을 말한다.
13. “**공공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은 제외한다.
 - 가. 제14조에 따른 정부미술품
 -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청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제30조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하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에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
14. “정부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으로서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 선정·관리하는 미술품을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분	공공조형물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시설물등	공공미술품
설치 장소	공공시설	건축물 대지 내 및 내부공간	모든 곳	정부청사 등
설치 목적	문화예술진흥, 공공의 미관, 경관조경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 촉진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

이러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와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략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개정, 건립심의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⁵⁾

해당 권고에서 제안한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통하여 규정⁶⁾하고 있지만, 훼손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누락되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조형물의 문화적·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5)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의안번호 제2014-305호)”, 2014. 9. 15.

6) 2025년 1월 기준 전국 186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고 있음.
이세진·정인아,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현안과 정책과제”, 건축공간연구원, 2025.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의 조성 목적과 지향점이 불명확하여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와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지속하여 제기되고 있음.⁷⁾⁸⁾

해당 문제 제기는 공공조형물이 국민 누구나 접근·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으로서 도시 및 생활환경의 미관을 형성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공공시설에 설치한 조각, 동상, 구조물, 설치미술, 기념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정의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개념을 법률상 명확히 하고(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국가가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철거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7) 이세진·정인아, 앞의 글, 건축공간연구원, 2025.

8) ““인천 새우깡 타워” “세종 저승사자” 공공조형물 흉물 논란”, 조선일보, 2019. 12. 17.

이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지속적으로 문화정책의 한 분야로 공공조형물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개정안은 공공조형물의 파손 등을 통해 기능과 외관을 해치고, 방치하여 손상시키는 등의 훼손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안 제9조의7제1항), 훼손행위에 대한 신고 체계 마련 및 포상금 지급(안 제9조의7제2항) 및 위와 같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42조).

이는 공공조형물의 물리적인 훼손행위를 통하여 문화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예방 수단을 규율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문화향유권을 보호하고 도시 경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공공조형물”은 조각, 동상, 설치미술 등을 포함하여 미술작품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미술

작품의 일부는 공공조형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인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공공조형물”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공공시설물등”을 정의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공미술품”을 규율하는 「미술진흥법」에서도 공공조형물을 포섭하는 것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공조형물을 어느 법률에서 규율할지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공공미술⁹⁾의 정의를 신설하며 공공미술 작품의 보호·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64)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공공시설¹⁰⁾에 포함되는 공원에 설치하는 분수, 조각 등의 공조형물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¹¹⁾에 따른 공원시설

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221596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미술”이란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또는 광장
 -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경우
 2. 기존 공원시설 부지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수선 외의 관리를 한 자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제5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로써 해당 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며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해당 법에서 금지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공원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개정안의 적용에 대한 법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임.¹²⁾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훼손행위 금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 내의 공공조형물은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며 “공공조형물”에 대한 정의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및 철거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국가의 공공조형물 기본정책 수립·시행 의무조항은 중복 규율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신설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모두 법률간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음.

아울러, 공공조형물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¹³⁾보다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관법」¹⁴⁾등 관련 법률을 통하여 입법 취지를 구현하는 것이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안 제2조제1항제3호의2는 공공조형물을 공공시설에 설치한 조형물로 정의하고 있어, 사립학교, 대학 등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인정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조형물 등이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의규정 중 “공공시설”을 “공공시설 등”으로 수정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유지 내 조형물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석상 여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13)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경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련 조례 제정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조형물 건립현황 (자치단체별/유형별) >

(단위 : 점)

구분	계	동상	기념탑	기념비	상징탑	환 조형물	기 념 조형물	상 징 조형물	기타
계	3,534	158	156	391	42	509	249	1,553	476
서울	258	12	5	29	2	32	60	93	25
부산	547	17	6	66		47	21	323	67
인천	164	1	1	3	1	52	26	25	55
대구	120	16		10		20	1	65	8
광주	99		1	2		6	21	59	10
대전	72	7	3	1	2	17	11	29	2
울산	204	7	5	35		11		146	
세종	5	1	2	2					
경기	345	8	17	15	2	130	5	151	17
강원	196	20	5	24	5	39	6	60	37
충북	204	11	15	16	6	14	21	99	22
충남	378	12	9	81	7	13	16	131	109
전북	177	11	19	33	5	10	7	90	2
전남	112	10	21	12	1	15	5	47	1
경북	244	10	11	27	6	64	5	97	24
경남	391	13	33	33	3	34	44	134	97
제주	18	2	3	2	2	5		4	

* 기타 : 사진, 벽화, 문학기 등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4)

<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구분		광역시	기초	계	비고
자치단체(개)		17	226	243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수)
조례	(개)	11	175(177)	186(188)	괄호는 부산 중구, 충남 보령의 관련 조례 2개를 포함
	(%)	64.7	77.4	76.5	자치단체 수 대비 조례 제정 비율
규칙	(개)	-	10	10	(경기) 고양, 남양주, 안양, 양주 / (인천) 미추홀구 / (부산) 사하구 / (충북) 옥천 / (전남) 보성, 순천 / (전북) 부안
계	(개)	11	185(187)	196(198)	

※ 출처 : 건축공간연구원(2025)